### 2024년도 서울특별시 시회복자기금(장애인복자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1925

2024년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 Ⅰ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4. 5.27

2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
3. 회부일자 : 2024. 5.30

4. 상정일자 :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24. 6.20)
 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(2024, 6.24)
  - 원안가결

## 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 김태균)

- O 의안번호 제1925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(안) 등 9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에 대한 제안설명으로.
-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변경안 등 7 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을 회수 하는 등 재무활동 조정으로 인한 2024년도 수입·지출계획의 변경으로, 총 853억 원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증액되었음
-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6억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외에, 행정운영경비에서 16백만 원을 감액하고, 정책사업 37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함

### 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#### 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제1925호, **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**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# 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#### 가. 제안이유

- 1).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2024년 수 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2). 이에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 규정에 따라,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 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. 2023년 결산에 따라, 「예치금」이 당초 5,316백만원에서 8,172백만 원으로 2,856백만원 증가하여, 2024 회계연도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 수」금액이 당초 5,316백만원에서 8,172백만원으로 2,856백만원 증 가하였음
  - 증가사유 : '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' 집행잔액 (2,515백만원), 이자수입(204백만원) 및 융자금 원금수입 (191백만원) 증가, 기타수입(14백만원), 기본경비 집행잔액 (11백만원),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(△79백만원)
- 2). 이에, 지출계획상 「여유자금 예치」금액이 당초 511백만원에서 3,367 백만원으로 2,856백만원 증액(559.4%)되었음

### [2024년 수입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장・관・항						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		계					7,931	10,787	2,856	36.0
세			외	4	È	입	225	225	_	_
	경	싱	- 적	세	외 수	입	225	225	_	_
		া	ス	}	수	입	225	225	_	_
보	전	수	입 등	및 i	내 부 거	래	7,706	10,562	2,856	37.1
	보	,	전	수	입	등	7,069	9,925	2,856	40.4
		융	자 금	· 원	금 수	입	1,753	1,753	-	_
		예	치	금	회	수	5,316	8,172	2,856	53.7
	내		부		거	래	637	637	-	_
		예	탁 금	무및	예 수	금	637	637	_	-

## [2024년 지출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 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7,931	10,787	2,856	36.0
장 애 인 복 지 증 진 사 업 지 원	7,400	7,400	1	_
장 애 인 단 체 및 사 업 지 원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7,400	7,400	-	_
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	7,400	7,400	ı	_
일 반 예 산 ( 재 무 활 동 )	511	3,367	2,856	559.4
보 전 지 출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511	3,367	2,856	559.4
여 유 자 금 예 치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511	3,367	2,856	559.4
7]	20	20	_	_
행정운영경비(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)	20	20	_	_
기금관리비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20	20	-	-

### 3. 검토의견

-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은 '23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가 증가(28억 5,600만원)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(28억 5,600만원)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○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1)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  - 동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을 당초 지출계획(5억 1,100만원)보다 559.4%, 28억 5,600 만원을 증액하여 변경(33억 6,700만원)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〈표 3-1〉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: 백만원, %)

			( _ / /	•
정 책 사 업 / 단 위 사 업 / 세 부 사 업	당 초	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	증 감	증 감 률
	( A )	( B )	(C=B-A)	(D=C/A)
지 출 합 계	7,931	10,787	2,856	36.0
장 애 인 복 지 증 진 사 업 지 원	7,400	7,400	-	-
일 반 예 산 ( 재 무 활 동 )	511	3,367	2,856	559.4
보 전 지 출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511	3,367	2,856	559.4
여 유 자 금 예 치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511	3,367	2,856	559.4
행 정 운 영 경 비 (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)	20	20	ı	-

※ 자료근거 : ①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지출계획, ②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'24, 5,27) 재구성

<sup>1) 「</sup>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① 생략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- 동 계정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'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'24년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, 이와 연동하여 여유자금을 지출계획중 예치 금으로 적립하고자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의 운용계획을 변경 요청한 것임
  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<sup>2)</sup>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 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<sup>2) 「</sup>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

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<sup>1.</sup>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

<sup>2.</sup> 장애인단체의 지도 · 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

<sup>3.</sup>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

<sup>4.</sup>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

<sup>5.</sup>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

<sup>6.</sup>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

<sup>7.</sup>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

<sup>8.</sup>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

<sup>9.</sup>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생략」

♡. 토론요지: 「생략」

### Ⅵ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

- 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#### 가. 소위원회

○ 위원구성:

- 위 원 장 : 이병도(도시계획균형)

- 부위원장: 신복자(기획경제), 박승진(주택공간)

- 소위원회: 구미경(행정자치), 박수빈(행정자치)

김재진(환경수자원), 김규남(문화체육관광)

유만희(보건복지), 김 경(보건복지)

이상욱(도시안전건설), 신동원(주택공간)

박영한(도시계획균형), 이경숙(교통)

정지웅(교육), 전병주(교육)

※ '24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성된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

### 나.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

### ○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4. 6.21(금) 15:00 ~ 18:00
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

#### ○ 제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4. 6.22(토) 14:30 ~ 18:00
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

#### ○ 제3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4. 6.23(일) 15:00 ~ 2024. 6.24(월) 03:00
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

## Ⅷ. 부대의결:「해당 없음」

Ⅷ. 심사결과: 원안 가결 (2024. 6.24)

#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의 안 번 호 1925 제출년월일: 2024년 5월 27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#### 1. 제안이유

가.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2024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
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 규정에 따라,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2023년 결산에 따라, 「예치금」이 당초 5,316백만원에서 8,172백만원으로 2,856백만원 증가하여, 2024 회계연도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금액이 당초 5,316백만원에서 8.172백만원으로 2.856백만원 증가하였음
  - 증가사유: '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' 집행잔액 (2,515백만원), 이자수입(204백만원) 및 융자금 원금수입 (191백만원) 증가, 기타수입(14백만원), 기본경비 집행잔액 (11백만원),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(△79백만원)
- 나. 이에, 지출계획상 「여유자금 예치」 금액이 당초 511백만원에서 3,367백만원으로 2,856백만원 증액(559.4%)되었음

## [2024년 수입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		징	· 관	• 항		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		ı	총	계			7,931	10,787	2,856	36.0
세		외		수	<u>-</u>	입	225	225	_	_
	경	상	적 /	세 .	외 수	입	225	225	_	_
		0]	자		수	입	225	225	_	_
보	전	수 입	등 !	및 내	부 거	래	7,706	10,562	2,856	37.1
	보	전	4	수	입	등	7,069	9,925	2,856	40.4
		융 지	나 금	원	금 수	입	1,753	1,753	_	_
		예	치	금	회	수	5,316	8,172	2,856	53.7
	내		부	,	거	래	637	637	_	_
		예 틱	† 금	및	예 수	금	637	637	_	_

## [2024년 지출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계	7,931	10,787	2,856	36.0
장 애 인 복 지 증 진 사 업 지 원	7,400	7,400	_	_
장 애 인 단 체 및 사 업 지 원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7,400	7,400	I	_
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	7,400	7,400	-	_
일 반 예 산 ( 재 무 활 동 )	511	3,367	2,856	559.4
보 전 지 출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511	3,367	2,856	559.4
여 유 자 금 예 치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511	3,367	2,856	559.4
기타	20	20	_	_
행정운영경비(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)	20	20	_	_
기금관리비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20	20	_	-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유명 (☎ 2133-7447)